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일시	2020. 12. 21.(월) / 총 3매(본문2)	
담당 부서 도로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상헌, 사무관 김정한, 주무관 정원식 • ☎ (044) 201-3887, 3880	
보도 일시	2020년 12월 22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2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「유료도로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- 전기·수소차 통행료 할인, 화물차 심야할인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
- 상습 과적·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, 법규 위반 횟수 따라 3~6개월 제외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올해 종료예정인 ‘전기·수소차’ 및 ‘화물차 심야시간’ 통행료 할인기간을 2년 연장하고, 상습 과적·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「유료도로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전기·수소차 할인 일몰기간 2년 연장(안 제8조제1항제9호)

- 전기·수소차 감면제도\*는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올해 말에 종료 예정(‘17.9~’20.12월)이었으나, 전기·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‘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하였다.

\* (대상)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 (감면비율) 통행료 50%

② 화물차 심야할인 일몰기간 2년 연장(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)

-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\*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도입(‘00년~)되어 올해 종료 예정이었으나, 물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‘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.

\* (대상) 사업용 화물차·건설기계 (감면비율) 심야시간(21~6시) 이용 비율에 따라 30~50%

③ 상습 과적·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(안 제8조2 신설)

○ 그간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량은 낙하물 사고, 도로 파손 등을 유발하여,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.

- 과적 또는 적재불량 등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, 연 2회 이상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\*에 대하여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을 3~6개월 제외\*\*할 예정이다.

\* 「도로법」 제77조 제1항 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39조 제1항 및 제4항

\*\* 연 2회 이상 위반 시 : 3개월 할인제외, 연 3회 이상 위반 시: 6개월 할인제외

○ 이번 방안은 「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(국토부·경찰청)」에 포함되어 올해 2월 ‘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’에서 확정되었으며,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「유료도로법 시행령」을 개정하였다.

- 제도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‘21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, ‘22년 1월 이후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“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·수소차 보급 확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,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·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”한다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김정환 사무관(☎ 044-201-3887)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상습 과적·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



### 개 념

연 2회 이상 상습 과적·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하여 법규 위반횟수에 따라 고속도로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을 3, 6개월간 제외하는 제도 (‘22.1.1시행)

\* 근거 :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

### 제외대상

도로법 제77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,제4항을 위반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 동일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 (위반당시 운행차량)



단, 22년 1월 1일 이후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하여 적용

### 감면제외 기간

연 2회 위반차량은 3개월간 감면 제외, 연 3회 이상 위반 차량은 6개월간 감면제외 (과태료범칙금 등을 납부한 다음 날 부터 적용)



- 감면제외 대상이 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감면제외 사유, 기간 등 안내문자 발송 (한국도로공사→운전자)

\* '21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안내문자 발송 예정

### 감면제외방법

감면제외 차량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할인 이후, 심야할인 금액을 별도고지

### 의견제출

감면제외기간에 해당 차량을 다른 운전자가 운행한 경우, 해당 유료도로 관리기관에 소명하여 정상 감면 가능

###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 개요

| 대 상 | 사업용 화물차량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

| 할 인 율 | 심야시간(21시~06시) 이용비율에 따라 통행료 30~50% 감면

\* 이용비율 20~70% → 30%감면, 이용비율 70%~100% → 50%감면

| 감면금액 | '19년 기준 878억원/년('18년 기준 802억원/년)

